

공 보

제498호 2015. 9. 9.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5-114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9, 2-197호선)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2

거창군 고시 제2015-116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거창군 공고 제 2015-771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 고 6

거창군 공고 제2015-774호 보상계획공고 10

거창군 공고 제2015-784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42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고 · 15

거창군 공고 제2015-785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165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공 고 18

거창군 공고 제2015-788호 「거창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2

거창군 공고 제2015-789호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4

회 람									
--------	--	--	--	--	--	--	--	--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9, 2-197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가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89,2-197호선)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
음과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5. 09. 03.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군 계 획 시 설	가조권역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사업에 따른 진입도로(소로2-189,2- 197호선)개설	거창	마상	소로	2	189	55	8.0	가조면 마상리 312-13번지 일원	경고115호 (‘79.5.24)	사업기간 변경
		거창	마상	소로	2	197	22	8.0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길 35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4.09.03 ~ 2015.08.31
- 변경 : 2014.09.03 ~ 2015.10.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편 입 토 지 조 서											
일련번호	위치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동	지번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마상리	312-13	잡	621	132	거창군					
2	마상리	317-1	잡	5	5	거창군					
3	마상리	315-1	잡	1334	4	거창군					
4	마상리	861-28	도	4039	20	국 (건설부)					
5	마상리	316-1	대	60	58	거창군					
6	마상리	316-2	답	172	48	거창군					
7	마상리	316-3	답	112	5	거창군					
8	마상리	316-4	답	1073	96	거창군					
9	수월리	453	과	2630	180	거창군					
소 계				10,046	548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고시 제2015-11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9. 7.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2길 11-6 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과(☎055-940-3311~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9-1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동동2길 11-6	2009-04-01	2015-09-07	국토해양부 노선명을 이용하여 명명함	
2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 44-1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산수병곡길 210	2009-12-28	2015-09-07	중산마을로 가는 길임이 반영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1596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흥덕길 133	2012-05-22	2015-09-07	상동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일곱번째 도로	
4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 1-1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마상3길 83-33	2009-04-01	2015-09-07	남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1610-7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보해길 862-58	2009-04-01	2015-09-07	행정구역 고제면을 지나가는 도로라 하 여 고제로라 명명	

○ 도로명주소폐지

일련 번호	폐지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폐지사유	비 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44-6	2009-04-01	2015-09-07	건물철거	

군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3 - 66호선) 사 업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66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09. 03.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 적 (㎡)			
교통 시설 (도로)	정장리 (소로3-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정장	소로	3	66	268.0	6.0	1,776	거창읍 정장리 929-5 ~ 거창읍 정장리 803-1	경고465호 ('92.12.24)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7.12.31

-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 4. 열 램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3,582	1,776					
1	거창읍 정장리	929-5	대	212	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최 성 근			
2	"	929-11	대	229	9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3	"	929-3	대	317	5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4	"	929-12	대	108	1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5	"	929-13	대	253	3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6	"	산22-5	임	99	17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5	장육수 외4인			
7	"	929	과	658	5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6	박 판 상			
8	"	930	전	519	145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6	박 판 상			
9	"	927-1	대	335	4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10	"	921-3	대	43	41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11	"	921-1	대	774	33	거창군 남하면 대아리 590-1	박 익 구			
12	"	909	대	449	4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0	조소철우			
13	"	911-5	대	76	7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53	전 동 판			
14	"	911-2	도	582	33		거 창 군			
15	"	895-2	도	28	1		거 창 군			
16	"	876	대	443	129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9	강승태 외1인			
17	"	797	대	79	2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50	변 인 기			
18	"	799	대	347	1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영 진			
19	"	792	대	215	3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2	이 유 승			
20	"	1167	도	2188	51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1	거창읍 정장리	803	대	213	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11 주공@104-803	손 금 양			
22	"	산25-3	임	397	45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23	"	산147	도	260	161		국(건설부)			
24	"	929-14	대	171	3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25	"	929-4	대	161	13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26	"	산25-1	임	99	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5	장 정 일			
27	"	1176	도	883	255		국(건설부)			
28	"	931	대	374	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8	김석순 외 1인			
29	"	934-2	대	326	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명 창			
30	"	934-9	도	48	2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명 창			
31	"	934-7	대	332	4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32	"	934-1	대	477	2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33	"	1172	구	628	184		국(농수산부)			
34	"	910-2	전	179	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6	최 정 순			
35	"	910-1	도	40	1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유 병 근			
36	"	875-1	대	201	15	부산해운대구우동1433 현대카멜리아1-1202	장 준 업			
37	"	796	대	202	7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7길 29, 106동1403호(대경넥스 빌)	정 희 철			
38	"	1166	도	221	47		국(건설부)			
39	"	800	대	156	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02	박 성 재			
40	"	791	대	248	9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36	현 한 순			
41	"	803-1	대	12	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97	조 영 이			

6.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열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이나 전화(055-940-3595),FAX(055-940-3579), E-mail : qudwnsa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에 계획된 「정장리(소로3-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9. 04.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 가. 사업명 : 정장리(소로3-6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일원
- 다.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268.0m, B=6.0m
- 라.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지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9-5번지 외 40필지
- 나. 물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95)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열람 및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시기에 맞춰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나.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신문 공고와 별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신문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3,582	1,776					
1	거창읍 정장리	929-5	대	212	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산3	최 성 근			
2	"	929-11	대	229	9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3	"	929-3	대	317	5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4	"	929-12	대	108	1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5	"	929-13	대	253	3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6	"	산22-5	임	99	17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5	장육수 외4인			
7	"	929	과	658	5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6	박 판 상			
8	"	930	전	519	145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16	박 판 상			
9	"	927-1	대	335	4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10	"	921-3	대	43	41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11	"	921-1	대	774	33	거창군 남하면 대야리 590-1	박 익 구			
12	"	909	대	449	4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0	조소철우			
13	"	911-5	대	76	7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53	전 동 판			
14	"	911-2	도	582	33		거 창 군			
15	"	895-2	도	28	1		거 창 군			
16	"	876	대	443	129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9	강승태 외1인			
17	"	797	대	79	2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50	변 인 기			
18	"	799	대	347	1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영 진			
19	"	792	대	215	3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2	이 유 승			
20	"	1167	도	2188	51		국(건설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1	거창읍 정장리	803	대	213	1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711 주공@104-803	손 금 양			
22	"	산25-3	임	397	45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23	"	산147	도	260	161		국(건설부)			
24	"	929-14	대	171	3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25	"	929-4	대	161	13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26	"	산25-1	임	99	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75	장 정 일			
27	"	1176	도	883	255		국(건설부)			
28	"	931	대	374	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08	김석순 외 1인			
29	"	934-2	대	326	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명 창			
30	"	934-9	도	48	2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98	이 명 창			
31	"	934-7	대	332	4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32	"	934-1	대	477	20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785-1	정장리마을회			
33	"	1172	구	628	184		국(농수산부)			
34	"	910-2	전	179	8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26	최 정 순			
35	"	910-1	도	40	14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유 병 근			
36	"	875-1	대	201	15	부산해운대구우동1433 현대카멜리아1-1202	장 준 업			
37	"	796	대	202	7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7길 29, 106동1403호(대경박스 빌)	정 희 철			
38	"	1166	도	221	47		국(건설부)			
39	"	800	대	156	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02	박 성 재			
40	"	791	대	248	92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936	현 한 순			
41	"	803-1	대	12	6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897	조 영 이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 - 42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42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09. 07.

거창군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²)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소로3-42호선)	거창	서변	소로	3	42	348	6.0	2,813	거창읍 서변리 606-1번지	경고465호('92.12.24)	2015.09~ 2017.06.30

2. 사업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붙임참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또는 전화(055-940-3594),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소로 3 - 42호선

일련 번호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13,120	2,813					
1	거창읍 서변리	606-1	도	66	3		국(건설부)			
2	“	627-2	대	69	28		거 창 군			
3	“	606-4	대	18	14		“			
4	“	628-3	대	46	46		“			
5	“	606-6	대	24	24		“			
6	“	626-4	대	86	86		“			
7	“	626-5	도	8	8		“			
8	“	727-2	대	56	56	거창읍 서변리 727	문 복 순			
9	“	726-2	대	7	7		거 창 군			
10	“	726-1	도	49	21		“			
11	“	694-1	도	10	7		“			
12	“	728-3	대	34	34		“			
13	“	694-2	대	5	5		“			
14	“	728-1	도	8	8		“			
15	“	695-2	대	64	64	거창읍 서변리 695	박 구 성			
16	“	725-6	대	21	21		거 창 군			
17	“	1173-1	도	6739	472		국(건설부)			
18	“	725-4	도	8	8		거 창 군			
19	“	695-1	도	16	6		“			
20	“	724-2	대	18	18	거창읍 서변리	이 재 영			
21	“	700-2	대	23	23		거 창 군			
22	“	723-2	대	18	18		“			
23	“	700-1	도	33	33	거창읍 서변리	신 분 이			
24	“	723-3	대	18	18	거창읍 서변리 723	이 영 선			
25	“	701-1	도	9	9	거창읍 서변리 723-1	오 대 근			
26	“	722-1	대	49	49		거 창 군			
27	“	701-3	대	9	9	거창읍 서변리 723-1	오 대 근			
28	“	701-4	도	2	2	거창읍 서변리 723-1	오 대 근			
29	“	704-1	도	10	9	거창읍 서변리	정 조 섭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30	“	721-2	대	37	37		거창군			
31	“	704-2	대	2	2		“			
32	“	705-1	도	4	4		“			
33	“	705-2	대	1	1		“			
34	거창읍 서변리	706-1	도	19	19		거창군			
35	“	720-3	대	92	92		“			
36	“	720-1	도	6	4		“			
37	“	739-4	도	8	1	거창읍 서변리 723	오성환			
38	“	712-1	대	18	18		“			
39	“	739-1	대	489	7	거창읍 서변리 739-1	해주오씨전서공파 지창고성변리문중			
40	“	719-1	답	72	40	거창읍 서변리 618	이헌태			
41	“	717-1	도	12	12		거창군			
42	“	717-3	대	30	30		“			
43	“	718-1	답	390	17	거창군 거창읍 하동	민정이			
44	“	717-4	대	12	12		거창군			
45	“	739-7	답	18	18		“			
46	“	740-5	구	423	3		국(농수산부)			
47	“	1167-5	구	783	53		국(농수산부)			
48	“	649-1	제	387	11		국(건설부)			
49	“	648-2	제	102	50		국(건설부)			
50	“	145	도	848	19		국(농수산부)			
51	“	1167-2	도	234	20		국(건설부)			
52	“	104-2	답	192	144		거창군			
53	“	109-1	전	22	22		“			
54	“	108-1	전	221	109		“			
55	“	107-1	전	63	63	울산북구 화봉동 452 동아A 107-405	김중근			
56	“	106-1	전	218	59	거창읍 서변리	이동운			
57	“	105-1	대	144	144		거창군			
58	“	103-1	전	137	137		“			
59	“	102-1	전	91	91		“			
60	“	101-1	전	155	155		“			
61	“	100-1	전	179	128		“			
62	“	99-1	전	173	170		“			
63	“	98-4	전	10	10	거창읍 동변리 231	김영준			
64	“	98-5	제	5	5	거창읍 동변리 231	김영준			

군 계 획 시 설(교통시설:소로3 - 164,165호선) 실 시 계 획 인 가 를 위 한 공 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164,165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09.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164호선)	거창	동변	소로	3	164	228	6.0	1,728	거창읍 동변리 514-2번지	거고25호 ('02.6.10)	2015.09~ 2017.08
	3				165	165	6.0	1,275	거창읍 동변리 1164-2번지			

2. 사업 시행자 :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따로붙임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상림리 64-1번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나 전화(055-940-3594), FAX(055-940-3579),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소로 3 - 164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424	1,728					
1	거창읍 동변리	514-2	도	53	24	거창읍 동변리 ***	표 * 준			
2	거창읍 동변리	1164-2	도	6588	210		국(건설부)			
3	거창읍 동변리	514-4	대	55	55	거창읍 동변리 ***	표 * 준			
4	거창읍 동변리	514-3	도	56	56	거창읍 동변리 ***	표 * 준			
5	거창읍 동변리	512-6	대	56	56		거 창 군			
6	거창읍 동변리	511-1	도	131	131		“			
7	거창읍 동변리	512-5	대	16	16		“			
8	거창읍 동변리	511-2	대	74	74		“			
9	거창읍 동변리	211-2	대	36	36	거창읍 동변리 ***	표 * 성			
10	거창읍 동변리	205-1	대	24	24		거 창 군			
11	거창읍 동변리	211-1	도	72	61		“			
12	거창읍 동변리	210-1	대	27	27	거창읍 동변리 ***	염 * 환			
13	거창읍 동변리	209-1	대	71	71	거창읍 동변리 ***	표 * 남			
14	거창읍 동변리	213-1	도	27	21		거 창 군			
15	거창읍 동변리	213-2	대	24	24	거창읍 동변리 ***	박 * 근			
16	거창읍 동변리	215-3	대	331	125	거창읍 동변리 ***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17	거창읍 동변리	215-8	대	153	153	거창읍 동변리 ***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18	거창읍 동변리	216-1	대	5	5	거창읍 동변리 ***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19	거창읍 동변리	215-7	대	44	44	거창읍 동변리 ***	신창표씨모제 영상공파종중			
20	거창읍 동변리	227-2	대	250	235		거 창 군			
21	거창읍 동변리	227-1	도	126	86		“			
22	거창읍 동변리	226-2	도	34	23		“			
23	거창읍 동변리	226-3	전	171	171		“			

○ 소로 3 - 16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9,734	1,275					
1	거창읍 동변리	1160-30	구	21,746	30		국(건설부)			
2	거창읍 동변리	1164-2	도	6588	431		국(건설부)			
3	거창읍 동변리	187-3	도	30	19		거창군			
4	거창읍 동변리	241-3	창	33	33	거창읍 동변리 ***	백 * 채			
5	거창읍 동변리	188-1	도	29	29		거창군			
6	거창읍 동변리	240-2	답	34	34	거창읍 동변리 ***	김 * 준			
7	거창읍 동변리	188-2	답	18	18		거창군			
8	거창읍 동변리	240-1	도	10	10		“			
9	거창읍 동변리	239-1	대	12	12	거창읍 동변리 ***	이 * 순			
10	거창읍 동변리	189-3	답	20	20		거창군			
11	거창읍 동변리	190-2	답	1	1		“			
12	거창읍 동변리	190-1	도	69	19		“			
13	거창읍 동변리	191-1	도	37	19		“			
14	거창읍 동변리	235-2	대	28	28		“			
15	거창읍 동변리	235-1	도	5	5		“			
16	거창읍 동변리	234-6	전	25	25		“			
17	거창읍 동변리	234-4	도	6	6		“			
18	거창읍 동변리	192-2	대	30	30		“			
19	거창읍 동변리	234-5	전	89	89		“			
20	거창읍 동변리	192-1	도	10	10		“			
21	거창읍 동변리	234-3	도	5	5		“			
22	거창읍 동변리	233-1	도	3	3		“			
23	거창읍 동변리	233-2	대	16	16		“			
24	거창읍 동변리	193-6	대	6	6		“			
25	거창읍 동변리	193-4	도	7	7		“			
26	거창읍 동변리	193-5	대	54	54		“			
27	거창읍 동변리	231-4	대	19	19	대구 달서구 용산동 ****-	구 * 숙			
28	거창읍 동변리	193-3	도	68	68	거창읍 동변리 ***	표 * 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29	거창읍 동변리	231-3	도	9	9		거창군			
30	거창읍 동변리	194-2	대	46	46		“			
31	거창읍 동변리	194-1	도	19	19		“			
32	거창읍 동변리	195-3	대	61	61		“			
33	거창읍 동변리	195-2	도	20	20		“			
34	거창읍 동변리	227-2	대	250	15		“			
35	거창읍 동변리	227-1	도	126	23		“			
36	거창읍 동변리	226-2	도	34	5		“			
37	거창읍 동변리	226-3	전	171	31		“			

「거창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2. 개정이유

○ 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명확히 하여 행정력 낭비와 규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관련 규정을 현실화하여 행정 효율 제고.

3. 주요내용

○ 조례 제13조(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의 명확화

○ 조례 제13조(거창군 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 위원회의 위원장 관련규정 현실화(거창군수 ⇨ 녹색환경과장)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녹색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670-807)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녹색환경과)
- 전화 : 055-940-3493, 팩스 : 055-940-3759,
이메일: gunsmith@korea.kr

붙 임 : 1. 신구문 대비표 1부

2. 「거창군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 1부. 끝.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신규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거창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생략)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 한에 관한 사항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 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그 밖에 자 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 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⑤ (생략)	제13조(거창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3.----- -----또는 <별표1>에 규정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색환경과장이 되 고 , 부위원장은 ----- ----- ----- -----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현행과 같음)

<별표1>

거창군 경관심의 대상 형질변경 사업 기준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당 지역은 (1)의 형질변경 기준만 충족하여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구 분 \ 사업계획면적	1,000㎡ 이상	3,000㎡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의외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기 준	내 용
가.	▶ 높이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되는 건축물
나.	▶ 높이 20m 이상의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다.	▶ 길이 3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라.	▶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마	▶ 경사 25% 이상에서 높이 5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거창군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조례(안)

(녹색환경과)

(제정) 1999.11.17 조례 제1547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일부개정) 2009.09.30 조례 제1939호

관리책임부서 : 녹색환경과
연락처: 055)940-349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및 제40조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지역실
정에 적절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9.9.30)

1. “자연경관”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연경치를 말한다.
2. “자연경관 보전”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視界)가 차단되지 않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 보전지역”이란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고
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이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
도, 지방도, 군도 연변으로서 그 거리는 군수가 결정한다.

제 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며,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제 4조 (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5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자연경관의 보전

제 6조 (자연경관 보전의 기본원칙) ①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관리
 2. 산림·하천·호수 등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3.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 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과의 조화 유도 및 시계 차단 방지
 5.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내 형질변경허가(개발행위) 등 남발 지양
- ②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조사·활용,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 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자연경관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가.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위치·면적 및 범위
 - 나.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생태적·경관적 가치
 - 다.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8조 (자연경관 관리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연경관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유

형별로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
 - 가. 산림축(山林軸)의 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생태계의 보전

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

다. 산 능선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및 경관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

라. 암벽·암석·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시계 차단행위 금지

마.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 자연경관 보전

2. 하천

가. 하천생태계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친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

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

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에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

마. 하천의 인위적인 친수공간 활용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

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 주변환경의 보전

나. 호수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친 자연적인 친수공간으로 정비

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자연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4. 도로

가.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건설

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

다. 도로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라. 산림단절식이 아닌 터널식 도로건설 및 동물 이동통로 설치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개정 2009.9.30)

가. 자연경관의 시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

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

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경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 유지 등

제 9조 (자연경관 보전지역의 지정) ①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자연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삭제 2009.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자연경관의 적정 관리) ①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이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자연경관에 관한 검토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토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권고하거나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하였으나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또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27조에 따라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거나, 시계가 차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요 도로변 가시지역 및 유적지, 명승지, 계곡 등에 대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경관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조 (자연경관 보전단체) (제12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 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 2009.9.3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 보전단체에 대하여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연경관 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 자연경관 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자연경관 보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2조 (자연경관 보전활동 및 지원) (제11조에서 이동)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등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3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거창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 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훼손행위 방지를 위하여 입목의 벌채 또는 <별표1>에 규정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색환경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
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거창군의회의원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관
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9.3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거창군 경관심의 대상 형질변경 사업 기준

가. 일반기준

다음 (1)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2)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해당 지역은 (1)형질변경 기준만 충족 하여도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한다.

(1)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종류

구 분 \ 사업계획면적	1,000㎡ 이상	3,000㎡ 이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보전)	농림지역 관리지역(생산) 관리지역(계획)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 시·도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의외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수도법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건설)	광역상수도설치지역 (공동주택의 경우 제외)
하천법		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소하천구역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기 준	내 용
가.	▶ 높이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되는 건축물
나.	▶ 높이 20m 이상의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
다.	▶ 길이 3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라.	▶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마	▶ 경사 25% 이상에서 높이 5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바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 하는 개발행위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환경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2. 개정이유

- 법령상 위임이 없는 의무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군민 정보보호 도모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환경보전보조금 지원 사업의 명시적 근거 마련
-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백서 발간, 위원회 운영 등 관련 현실화 필요
- 조례 제27조(환경백서) : 환경백서의 작성을 매년 ⇨ 필요시 작성

주요내용

- 조례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 “5년 마다” ⇨ “10년 마다” 등
- 조례 제17조(환경보전활동대 대한 재정지원 등) : 재정지원 환경보전 활동의 구체적 명시
- 조례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 실시 등) : 군내 정기적 환경질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표 의무조항 삭제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녹색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670-807)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녹색환경과)
- 전화 : 055-940-3493, 팩스 : 055-940-3759,
이메일: gunsmith@korea.kr

붙 임 : 1. 신구문 대비표 1부

2.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1부. 끝.

환경기본조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 (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p><삭 제></p>
<p>제 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 (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u>거창군 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u>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시책 <p>4. (생략)</p> <p>5. (생략)</p> <p>③ <u>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u></p> <p>④ <u>군수는 군의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u></p> <p>⑤ <u>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u></p>	<p>제 9조 (환경<u>보전</u>계획의 수립) ①----- -----<u>거창군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가 있을 때 환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환경여건 변화와 전망</u> 2. <u>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u> 3. <u>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u> <p>4.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③ <u>군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u></p> <p>④ <삭제></p> <p>⑤ <u>군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 13조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군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 14조 (지역 배출허용 기준 설정) ① 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p> <p>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삭제></p>
<p>제 15조 (지역환경영향평가)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 16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u>강구하여야 한다.</u></p>	<p>제 16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 ----- ----- -----<u>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생략) 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u>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p>	<p>제17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군은----- -----위하여 <u>다음 각호의 사업에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u> <u>1.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기술개발</u> <u>2.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u> <u>3. 옛도랑 복원사업 및 교육·홍보 활동</u> <u>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활동</u> <u>5.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u> <u>6.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p>제 22조 (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생략)</p>	<p>제 21조 (정보의 공개) ① ----- ----- ----- ----- ----- ----- <u>공개한다.</u>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 25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u>군은</u>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u>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u></p>	<p>제 25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군은----- ----- ----- ----- ----- <u>실시 한다.</u></p>
<p>제 26조 (환경백서) ① <u>군은</u>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u>환경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한다.</u></p>	<p>제 26조 (환경백서) ① 군은 ---- ----- ----- ----- -----<u>환경백서를 작성하여</u> <u>공표할 수 있다.</u></p>
<p>제 27조 (보고) ① <u>군은</u>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p>	<p><삭제></p>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안)

(녹색환경과)

(제정) 1999.02.13 조례 제150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관리책임부서 : 녹색환경과
연락처: 055)940-349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이념) **군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형 농촌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조(기본원칙) <삭제>

제 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군·사업자·군민 등의 책무

제 5조 (군의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형 농촌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수질·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6. 지구의 온난화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에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 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건전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발적노력 및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과 환경오염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교육기관·언론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민간 환경단체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군의 시책에 협력 자문하고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경보전계획 등

제 9조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보전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사회적 여건 변동 등으로 필요가 있을 때 환경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군은 군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 10조 (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8.13, 조례 제1984호 부칙 제2조>
6. 기타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번호 이동, 조례 제1984호 부칙 제2조, 2010.08.13>

④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⑤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 (자연 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2조 (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

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환경보전시책

제 13조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삭제>

제 14조 (지역 배출허용 기준 설정) <삭제>

제 15조 (지역환경영향평가) <삭제>

제 16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7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설치 등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사·연구
2.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연정화 등 실천사업
3. 옛도랑 복원사업 및 교육·홍보 활동
4. 야생생물 보호 및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 퇴치활동
5. 환경오염 감시 및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18조 (규제조치) ①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9조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1조 (국제 협력 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와 군민참여

제 22조 (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제 23조 (군민참여등)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4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 26조 (환경백서) ①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 27조 (보고) <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